



영국의 퇴직연금 세제 변화에 따른 적립금 수령행태와 시사점

정원석 연구위원

- 영국은 퇴직연금 적립금 연금화 수령의무 폐지(이하 ‘연금자유화’) 이후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퇴직연금 적립금 수령방식이 다양화되었음.
 - 연금자유화 이전 적립금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최대 55%의 세금이 부과되었으나, 연금자유화 이후 세율 0~45%의 종합과세로 전환되어 세금부담이 완화됨.
- 퇴직연금 적립금 수령행태를 분석한 결과 가입자들은 연금 적립금 규모가 작을수록 일시금으로, 연금 적립금 규모가 클수록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가입자들이 작은 규모의 적립금을 장기간 연금으로 분할 수령할 경우 수령하는 연금액이 적기 때문으로 보임.
 - 또한 종합과세의 특성상 적립금이 큰 경우 적용 세율이 높기 때문에 면세범위인 적립금의 25%까지만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나머지 적립금은 실적 배당형 연금(Drawdown) 등으로 수령하는 것으로 보임.
-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퇴직급여 수령자의 대부분이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퇴직연금 수령행태에서는 영국과 유사하게 노후소득원으로서의 역할 및 세제(稅制)에 반응하는 것으로 보임.
 - 퇴직급여 수령자의 98%가 적립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였으며, 평균 금액은 2,078만 원으로 소액이었으나, 연금으로 수령한 수령자의 평균 적립금은 26,748만 원으로 높은 수준이었음.
 - 이는 노후소득원으로서의 기능과 함께, 적립금이 많을수록 연금화 수령 시 얻게 되는 세제혜택이 크기 때문으로 풀이됨.
- 정부는 퇴직연금이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연금세제 개편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퇴직연금 가입자가 충분한 연금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는 퇴직연금 적립의 연속성 강화 및 중도 인출 제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일시금 수령 시 적용세율을 높이고 연금으로 수령 시 세제혜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연금세제 개편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 검토배경



- 영국은 2015년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금화 수령¹⁾ 의무를 폐지(이하 ‘연금자유화’²⁾)하였음.
 - 연금자유화 이전 영국은 퇴직연금 적립금을 일시금으로 인출할 경우, 적립금의 25%까지는 비과세 하였으나 25% 이상 인출분에 대해서는 최대 55%까지 중과세하였음.
 - 연금자유화 이후 영국은 적립금의 25%까지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비과세하되, 적립금의 25% 이상 인출금에 대해서는 일시금으로 인출할 경우 세율 0~45%의 종합소득세로 과세함.³⁾
- 연금자유화 이후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퇴직연금 수령형태는 큰 변화를 보였음.⁴⁾
 - 연금자유화 이전 퇴직연금 수령자가 종신연금을 선택하는 비율이 94%에 달했으나 연금자유화 이후 종신연금 선택비율은 10%대로 감소하였음.
 - 반면 연금자유화 이전 10% 이하이던 실적 배당형 연금(이하 ‘Drawdown’⁵⁾)의 선택비율은 연금자유화 이후 28%, 그리고 일시금 수령비율은 50% 이상으로 증가하였음.
 - 일시금 수령 허용이 퇴직연금 가입자의 적립금 수령형태에 큰 변화를 준 것을 알 수 있음.
- 본고에서는 영국의 퇴직연금 적립금 수령에 관한 세제 변화(연금자유화) 이후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에 따른 연금수령의 특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퇴직연금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봄.

- 1) 연금의 적립금을 적립하는 단계의 연금은 Pension이라 칭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적립된 연금을 수령하는 것을 Annuity라 칭함. 본문에서는 연금형태로 수령한다는 의미의 Annuitization을 “연금화 수령”으로 칭함.
- 2) 영국 언론들은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금수령 의무화 폐지를 Pension Freedom이라고 일컫고 있음.
- 3) 2016년 현재 영국의 종합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음.

밴드	과세표준	세율
Personal Allowance	~£11,000	0%
Basic rate	£11,001~£43,000	20%
Higher rate	£43,001~£150,000	40%
Additional rate	£150,000~	45%

자료: 영국정부 홈페이지, <https://www.gov.uk/income-tax-rates>.

- 4) 자세한 내용은 정원석(2016. 10. 17), 「영국 퇴직연금 연금화 수령의무 폐지 이후 가입자 행태」, 『KiRi 리포트』, 제404호, 보험연구원 참조.
- 5) Drawdown이란 예정이율에 따라 연금을 수령하는 종신연금과 달리 운용자산의 수익률에 따라 연금을 수령하는 실적 배당형 연금의 형태이며, 자세한 내용은 정원석(2016. 10. 17) 참조.

2. 영국 퇴직연금 가입자의 수령방식 선택



가. 영국 퇴직연금 적립금의 수령방법

■ 영국의 퇴직연금 수령방법은 크게 연금자유화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음.

- 연금자유화 이전 모든 가입자는 퇴직연금 적립금의 25% 이상은 종신연금 혹은 Drawdown으로 수령해야 했음.
 - 영국은 적립금의 25%를 초과하는 수령액에 대해서는 최대 55%의 세율로 중과세하였음.
 - 단, 적립금 규모가 일정수준 이하⁶⁾인 경우 적립금의 25%를 초과하는 일시금 인출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로 과세하는데, 이를 Small Pension Pot이라 칭함.
- 하지만 연금자유화 이후 일시금 수령을 가능케 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Drawdown과 비결정형 연금펀드(UFPLS: Uncrystallized Fund Pension Lump Sum) 등이 도입되었음.
 - 새로운 형태의 Drawdown인 Flexi-Access Drawdown(이하 'FAD')은 적립금을 연금형태로 수령하되 본인이 원할 경우 이를 제한 없이 인출할 수 있으며 인출 시 종합과세함.
 - UFPLS의 경우 펀드로 분류되는데, 수시 인출이 가능하며 인출 시 인출금의 25%는 비과세이며 나머지 75%는 종합과세됨.

〈표 1〉 영국의 퇴직연금 적립금 수령방법

구분	도입 시기	수령방법상 특징	수령 시 과세
종신연금(Annuity)	자유화 이전	사망 시까지 일정액 수령	종합과세
Small Pension Pot	자유화 이전	적립금 규모가 작은 경우 일시금 수령 허용	종합과세
Draw down	Capped Income Drawdown	연금 수령액은 적립금 수익률에 따름	종합과세
	Flexible Income Drawdown	연금 수령액은 적립금 수익률에 따르며, 여타 소득원 존재 시 일부 일시금 인출 가능	종합과세
	Flexi-Access Drawdown	연금 수령액은 적립금 수익률에 따르며, 제한 없이 일시금 인출 가능	종합과세
UFPLS	자유화 이후	제한 없이 적립금 인출 가능	25% 비과세 75% 종합과세

6) Small Pension Pot 인정 기준 금액은 18,000파운드 이하에서 연금자유화계획 발표 이후 30,000파운드로 상향 조정되었음.

나. 연금자유화 이후 적립금 규모별 퇴직연금 수령형태

■ 연금자유화 이후 퇴직연금 적립금 수령형태를 분석한 결과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퇴직연금 수령방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음.

- 퇴직연금 적립금이 3만 파운드 이하인 계좌의 경우 일시금 인출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음.
 - UFPLS를 통한 전액 인출(Full)이 36%, 그리고 Small Pension Pot을 통한 전액 인출이 33%로 일시금 수령이 적립금 규모가 작은 가입자의 주된 적립금 수령방법이었음.
- 반면, 적립금 규모가 10~25만 파운드 혹은 그 이상인 가입자들은 비과세 한도인 적립금의 25%까지 수령한 이후 Drawdown을 이용해 연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판단됨.
- 즉, 연금적립금의 규모가 클수록 종신연금 혹은 Drawdown 등 연금화 수령 비율이 높고 적립금 규모가 작을수록 Small Pension Pot 혹은 UFPLS 등 일시금 수령 비율이 높음.
 - 생명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종신연금(Annuity)을 선택하는 비율은 10% 내외에 불과함.

〈표 2〉 적립금 규모별 퇴직연금 수령형태

(단위: 개, %)

구분	3만 파운드 미만		3만~5만 파운드		5만~10만 파운드		10만~25만 파운드		25만 파운드 이상	
	계좌 수	비중	계좌 수	비중	계좌 수	비중	계좌 수	비중	계좌 수	비중
UFPLS - Full	47,331	36	7,605	31	2,663	12	372	2	137	1
UFPLS - Partial	1,796	1	847	3	412	2	248	2	216	2
Drawdown - Full	12,717	10	2,313	9	1,514	7	896	5	472	4
Drawdown - Partial	13,292	10	8,243	34	11,891	53	11,589	70	8,528	73
Small pot	43,089	33	2	0	1	0	-	0	2	0
Withdraw taxfree only	6,164	5	2,834	12	3,224	14	2,445	15	2,205	19
Annuity	6,025	5	2,700	11	2,559	11	981	6	153	1
합계	130,414	100	24,544	100	22,264	100	16,531	100	11,713	100

자료: FCA(2015), FCA pension freedoms data collection exercise: analysis and findings에 공개된 연금자유화 이후 2015년 4월부터 6월까지 퇴직연금 수령형태를 재구성.

■ 퇴직연금 적립금이 적은 경우 일시금 수령을 선호하는 이유는 적은 연금수령액과 낮은 세율인 것으로 보임.

- 적은 규모의 적립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월 수령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노후 소득원으로서 의미가 미미함.
 - 예를 들어 24,000파운드의 적립금을 20년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월 수령액의 가치는 약 100파운드에 불과함.⁷⁾
- 반면 일시금으로 인출할 경우 적립금의 25%인 6,000파운드까지 비과세이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6,000~17,000파운드까지는 세율 0%, 17,000~24,000파운드까지는 20%의 비교적 낮은 세율이 적용됨.⁸⁾

■ 적립금 규모가 큰 가입자의 경우 비과세가 적용되는 적립금의 25%까지는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나머지 적립금은 Drawdown 등 펀드 형태로 운용하면서 연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보임.

- 가입자들은 종신연금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Drawdown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임.⁹⁾
 - 또한 연금자유화 이후 금융회사들은 Drawdown의 수수료와 가입금액을 인하하는 등 가입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노력했음.¹⁰⁾
- 특히, 적립금 규모가 큰 가입자의 경우 적용받는 세율이 높기 때문에 과세를 피하고자 Drawdown을 선택할 유인이 큼.
 - 예를 들어 퇴직연금 적립금이 8만 파운드라고 할 때, 25%인 2만 파운드에 대해서는 비과세이지만, 나머지 6만 파운드를 일시금으로 수령 시 소득세율에 따라 최대 40%까지 과세됨.

3. 우리나라의 퇴직급여¹¹⁾ 수령방식 선택



■ 우리나라 퇴직급여 적립금 수령 시 과세는 영국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7) 이자율과 물가 상승률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8) 여타 소득이 없다고 가정.

9) The guardian(2013. 2. 15), “Annuities VS drawdown” 참조.

10) Financial Times(2016. 4. 1), “Pension freedoms on year on: Boomers shun sports cars for DIY” 참조.

11) 과거부터 운영되어 오던 퇴직금과 2006년 도입된 퇴직연금을 통칭하여 퇴직급여로 칭함.

- 앞서 언급한 대로 영국은 적립금 인출 시 적립금의 25%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지만 이를 초과하는 인출금액에 대해서는 0~45%의 종합소득세로 과세함.
 - 따라서 근로소득이 존재하거나 적립금 규모가 큰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 높은 세율을 감수해야 함.
- 반면, 우리나라의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는 퇴직소득세로 분류과세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대상이 아님.¹²⁾
 - 퇴직소득세의 명목세율은 6~38%이나 공제 및 연분연승법을 통한 과세 감면으로 퇴직 급여를 일시금으로 선택할 경우, 대부분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3% 이하의 세율을 적용 받고 있음.¹³⁾

■ 우리나라 퇴직자 역시 퇴직급여 선택 시 노후소득 보장 기여도와 세제상의 유·불리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퇴직급여 수령형태를 결정하는 것으로 보임.

- <표 3>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퇴직급여 수령자는 일시금을 선택하고 있으며 영국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일시금을 선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낮은 세율 때문으로 보임.
 - 우리나라는 퇴직연금이 도입 된지 10년 밖에 지나지 않아 퇴직연금과 퇴직금을 합친 퇴직급여를 기준으로 적립금 수령형태를 분석함.
 - 퇴직금과 퇴직연금 모두 연금 혹은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고 과세방식 역시 동일하게 퇴직소득세로 분류과세됨.
 - 영국은 적립금 규모가 작아 적용세율이 낮은 경우 일시금 선택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우리나라 퇴직급여 가입자들도 이와 유사하게 일시금 선택자의 적립금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

<표 3> 수령형태별 퇴직급여 수령현황

(단위: 개, 억 원, 만 원, %)

분류	일시금			연금			합계	
	계좌 수	금액	계좌당 적립금	계좌 수	금액	계좌당 적립금	계좌 수	금액
계좌/금액	147,784	30,719	2,078	2,389	6,389	26,743	150,173	37,108
비중	98	83	-	2	17	-	100	100

주: 2016년 상반기 동안 퇴직급여 수령현황임.
 자료: 금융감독원(2016. 6), 퇴직연금 영업실적 재구성.

12) 소득의 종류를 달리하여 과세한다는 의미로 소득의 규모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의 대상이 되지 않음.
 13)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4. 8. 27),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 일시금을 선택한 비율이 퇴직급여 수령자의 98%에 이르며 이들의 일인당 평균 적립금은 2,078만 원으로 나타났다.
 - 이를 10년간 연금 수령 시 월 수령액은 현재가치로 매월 17만 원으로 낮은 수준임.
 - 또한 적립금이 적을 경우 누진적으로 적용되는 퇴직소득세율 역시 낮기 때문에 일시금 수령에 대한 세(稅)부담은 매우 적음.
- 연금을 선택한 퇴직급여 수령자의 일인당 적립금은 평균 26,743만 원임.
 - 이를 10년간 연금 수령 시 월 수령액은 현재가치로 매월 223만 원으로 노후소득원으로서의 큰 의미가 있음.
- 특히 적립금이 고액인 가입자의 경우 세제상의 혜택을 최대한 활용한 것으로 보임.
 - 퇴직급여 적립금을 연금으로 수령 시 산출된 퇴직소득세의 30%를 경감하며, 이를 연금수령기간 동안 나누어 납부할 수 있는 세제혜택이 있음.

4. 결론 및 시사점



■ 연금자유화 이후 영국 퇴직연금 가입자의 수령행태가 크게 변화하였음.

- 연금자유화 이전 주된 수령형태이던 종신연금(Annuity)의 선택비율은 감소한 반면 일시금과 Drawdown 선택 비중이 증가하였음.
- 특히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큰 가입자는 연금형태로 적립금을 선택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반면, 적립금 규모가 작은 가입자는 일시금을 선택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가입자가 적립금이 노후소득원으로서의 기능 여부, 그리고 일시금 혹은 연금수령 시 세제상의 유·불리를 고려하기 때문으로 판단됨.

■ 우리나라 퇴직급여 수령자들은 주로 일시금을 선택하고 있는데, 이 역시 영국과 유사하게 적립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여도 및 세제상의 이유인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적립금 규모가 큰 경우 연금화 수령 시 누릴 수 있는 세제혜택이 상당하며, 가입자들은 이에 반응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영국과 마찬가지로 적립금 규모가 작은 가입자들은 일시금으로 수령하였으며, 큰 가입자들은

연금화하여 수령하였음.

■ 따라서 퇴직연금이 연금으로 수령되어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정부는 퇴직연금이 노후소득원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립금의 중도인출 및 연속성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함.
 - 예를 들면, 퇴직연금 적립금을 중도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정부는 적립금 수령 시 연금화 수령에 수반되는 세제혜택은 강화하고 일시금 수령 시 과세는 강화하여 연금수령 유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kiri](#)